

대학관리공간 신청 및 평가에 관한 지침

제정 2016. 10. 6.

I. 목 적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공간관리 규정” (이하 “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공간의 사용신청, 평가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정하여 대학관리공간 운영에 투명성과 적정성을 기하고자 함.

II. 공 지

1.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이하 “대학” 이라 한다)은 대학관리공간의 현황을 대학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상시 공지해야 하며, 공지 사항으로는 공간의 호실, 면적, 사용자, 사용 승인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2. 대학은 규정 제4조 제4항에 의거 공간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공간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간사용신청 접수마감 20일 전까지 학부에 공실현황을 공지하는 공문 시행해야 한다. 단 공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III. 사용 신청

1. 대학관리공간의 사용신청은 2월말, 5월말, 8월말, 11월말로 연 4회 실시하며, 신청서를 접수받은 대학은 소관 위원회의 평가 등의 제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각각의 접수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2. 규정 제7조의 최장 승인기간(2년)이 만료되는 공간에 대해서 대학은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만료 사실을 학부(사용자)에 통보해야 한다. 학부(사용자)는 계속해서 사용할 경우 통보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공간사용신청서와 함께 계속 사용해야 하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기한 내에 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학에 공간을 반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대학관리공간 신청 제출서류는 규정 제6조의 공간사용신청서 외 연구과제 증가 현황(별첨 3)이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같이 제출해야 한다.

IV. 평 가

1. 동일한 공간에 복수의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는 경쟁평가를 실시하여 사용자를 결정한다. 그러나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는 사용 승인여부만을 판단한다.

부칙(제120호, 2016.10.6.)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